제정 1990. 8. 7. 훈령 제192호 전부개정 2004. 12. 13. 훈령 제454호 일부개정 2020. 1. 31. 훈령 제706호(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 정비 규정, 제명개정) 전부개정 2024. 1. 19. 훈령 제751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민방위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말하며, 경보의 종류 및 신호방법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이하 "전달 규정"이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 2.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란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3.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경보 장비를 말한다.
- 4. "관리책임자"란 경보발령·전달계통에 따라 경보가 발령·전달되었을 때, 관할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 구청과 동의 민방위 경 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 5. "시설관리요원"이란 관리책임자의 신속한 경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동의 경우 민방위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방위 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 본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용한다.
- 제4조(설치) 경보시설의 설치지역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상급기관 및 자체 계

획에 의해 추가 설치한다.

- 제5조(시설관리요원) 관리책임자는 경보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민방위업무 담당 공무원을 "시설관리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휘체계) ① 관리책임자는 경보전달 임무를 총괄하며 경보시설의 관리·운영을 지휘·감독한다.
 - ② 시설관리요원은 경보시설관리와 경보전달을 담당하며, 경보전달 시 전달 규정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도 통제소"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 제7조(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경보시설의 운영업무 총괄
 - 2. 시설관리요원의 경보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 3. 그 밖에 경보업무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설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경보시설 정기 점검 · 정비
 - 2. 경보시설 출입자 통제 및 보안관리
 - 3. 도 통제소에서 전달되는 경보와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의 발령에 의한 경 보 전달 및 방송 실시
 - 4. 경보시설 설치 및 이전 시 장소 확보
 - 5. 그 밖에 경보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경보의 발령권자) ① 시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위 경보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민방공경보를 발령한 다.
 - ② 시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 제9조(우선 조치 후 보고) 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통제소"라 한다) 및 도 통제소로부터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본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 서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과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장(이하 "도 통제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본 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 과 도 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보 발령 사전예고 접수 시 조치) 관리책임자는 민방위경보 발령권자 로부터 경보 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시설관리요원 비상소집 및 정위치 근무 확인
 - 2. 민방위 경보 발령 예고 관련 상황 파악
 - 3. 경보장비 정상가동 상태 유지
 - 4. 민방위 경보 방송 준비
 - 5. 유관 기관과 군부대에 상황전파
 - 6. 그 밖에 민방위 경보 발령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 제11조(민방위 경보 발령 시 조치) 시설관리요원은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로부터의 정확한 경보 접수
 - 2. 경보시설을 통한 사이렌 울림(자동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동 작동)
 - 3. 별표 2의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에 따라 경보방송 실시
 - 4. 유관 기관과 군부대에 경보전달
 - 5. 경보발령 후에는 지체 없이 본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 하고 본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부서장(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는 당 직사령)은 시장 및 도 통제소장에게 보고
- 제12조(경보 오보 시 조치) 시설관리요원은 경보발령이 오보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로부터 경보발령 오보 확인
 - 2. 경보전달 상위기관에 오보발생의 통보
 - 3. 상위기관에서 해명방송이 불가한 경우 별표 3의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 문안에 따른 해명방송 실시
 - 4. 해명방송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본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는 당 직사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및 도 통제소장에게 보고
- 제13조(운영) 경보시설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 제14조(비상소집 및 근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관리요원을 비상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도 통제소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역 군부대장의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이 있을 때
-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3. 도지사 및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 4.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근무자의 임무수칙 등) ① 관리책임자 및 시설관리요원은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 및 시설관리요원 변동 시 본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청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장은 도 통제소장에게 보고한다.
 - ③ 관리책임자 및 시설관리요원의 임무수칙은 별표 4와 같다.
- 제16조(보안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시설별 보안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시설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설관리요원은 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점에 대해 본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경보시설 출입문에 흰색바탕에 청색 또는 붉은색 글씨로 제한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외부인의 출입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관리책임자는 경보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물품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각 경보시설장비에 대하여 시설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경보시설장비는「안양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장비점검) ① 관리책임자 및 시설관리요원은 경보시설장비에 대해서 매주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점검 하여야 하며, 매월 마지막 주에

는 주간점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본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경보시설장비의 운영 · 관리 상태 및 문제점
- 2. 경보시설장비의 정비 상태
- 3. 경보시설장비의 외부 상태 등
- 4. 그 밖에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라디오, 랜턴, 비치서류 등)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민방위 경보시설 주간점검표를 경보시설 내에 갖추
- 어 두고, 주요 사항 발생 시 본청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장 및 도 통제소장에 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각 경보시설장비의 안정적 유지와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전문 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9조(장비고장 시 조치) ① 시설관리요원은 경보시설장비 고장 시 본청 민 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본청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 부서장 은 본청 시설관리요원에게 예비품으로 수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설관리요원은 장비고장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 수리 및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수리 불가 시에는 도 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청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장은 경보시설장비 고장 발생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 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고장구간 및 경보시설 장비명
 - 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 3. 복구예정일시 등
- 제20조(기록유지) 경보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1. 출입자통제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 2. 민방위 경보시설 주간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 3.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전달 규정 별표 1)
 - 4. 민방위 및 재난 경보 방송 및 해명방송 문안 (별표 2, 별표 3)
-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관리책임자는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와 민방위 경보 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지방방송사, 지역 군부대, 그 밖의 유관 기

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4. 1. 19. 훈령 제751호 전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현황 (제4조)

설 치 장 소	유 형	주소	비	고
		17개소		
안 양 시 청	대 형	동안구 시민대로 235 (관양동)		
만 안 구 청	"	만안구 안양로 128 (안양동)		
안 양 4 동 행정복지센터	"	만안구 냉천로193번길 24 (안양동)		
신성고등학교 경 비 실	DMB	만안구 소곡로 93 (안양동)		
안 양 9 동 행정복지센터	중 형	만안구 병목안로142번길 12-9 (안양동)		
창암경로당	DMB	만안구 창박로41번길 34 (안양동)		
석 수 2 동 행정복지센터	대 형	만안구 안양로 496 (석수동)		
충 훈 동 행정복지센터	중 형	만안구 충훈로90번길 36 (석수동)		
박 달 1 동 행정복지센터	대 형	만안구 양화로127번길 9 (박달동)		
비 산 1 동 행정복지센터	대 형	동안구 비산로 12 (비산동)		
비 산 3 동 행정복지센터	DMB	동안구 운곡로 34 (비산동)		
관 양 동 행정복지센터	중 형	동안구 관평로358번길 46 (관양동)		
관양도서관	"	동안구 동편로 124 (관양동)		
평 촌 동 행정복지센터	"	동안구 흥안대로456번길 21 (평촌동)		
귀 인 동 행정복지센터	DMB	동안구 부림로 16 (평촌동)		
호계도서관	대 형	동안구 경수대로685번길 26 (호계동)		
호 계 3 동 행정복지센터	중 형	동안구 경수대로 504 (호계동)		

[별표 2]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근거: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 [별표5] 】

1. 주간 민방공경보 방송문안

가. 경계경보(항공기)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〇〇지역에 적의 항공기 공격이 예상되므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계경보(탄도탄)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적의 탄도탄 발사가 예상되므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 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급적 차량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 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 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이나 회사에서 구비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상비약품, 그리고 화생방 대비용품을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 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안양시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 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 공습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지하시설이나 대피소, 건물 내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건물내, 지하대피소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 하고, 손님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문을 닫고 유리창 파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 민방위경 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안양시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 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상황 변화에 대비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사태 수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 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계/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계/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야간 민방공경보 방송문안

*야간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적의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므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민방위 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야간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우선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 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나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 발령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이상 ○○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야간 공습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전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옥내 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지하시설 또는 건물 내로 대피하시고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 야간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곧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 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

단하고, 모든 전등을 끈 다음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 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 되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안양시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 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야간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등화관제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야가 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계/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계/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화생방경보 방송문안

가. 화생방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보호 장비가 없으면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실내나 높은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생방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상황1 : 화생방 작용제 탐지 시, 오염예상 시 또는 공격확인 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보호의 또는 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노출 방지 및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인근 대피 소나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의 오염 공기가 들어오 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내 위치에서 오염지역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하고, 오염지역에서 내 위치로 바람이 불 때는 좌우측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출입문과 창문은 닫고, 젖은 수건, 신문지, 알루미늄테이프로 밀폐하고, 에 어컨, 환풍기,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중단시켜야 하며, 외부와 연결된 기기 주변을 랩. 접착테이프로 밀봉합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

- 하고 손님들에게 젖은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가축이나 반려동물들에 의한 전염의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항상 오염 여 부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음식물은 15분 이상 조리해서 섭취하고, 몸과 가정의 청결을 유지, 침구류 는 자주 일광소독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물질, 오염 환자에게는 접근, 접촉을 하지 말고, 황사마스크나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119로 신고합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 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신속히 오염지역을 이탈하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안양시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 경보발령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상황2 : 화생방공격 종료 시

- 오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 상에 따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 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 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 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안양시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 경보발령 상황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경보해제(화생방)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전역에 발령했던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핵 경보 방송문안

가. 핵 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전역에 실제 핵 경보를 발령합니다.

- 핵경보 사이렌 (유 ~) -

실제 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핵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지하시설 또는 건물내 지하공간으로 대피하고 충격 및 진동에 의한 건물 잔해, 유리창 파편에 다치지 않도록 신체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핵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상황1: 핵공격 시

○ 최대한 외부와 차단된 대피시설, 지하공간으로 대피하고, 충격·진동에 의

- 한 건물 잔해에 다치지 않도록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폭발 화구와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하고 외부의 도랑, 차폐물 등을 이용하여 방사선 피폭과 충격으로부터 신체 노 출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섬광 등의 공격 시작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2~3보 이상 움직이지 말고 즉시 폭발 반대 방향으로 도랑, 엄폐물 등을 활용하여 폭풍이 멈출 때까지 지면 접촉이 최소화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안양시 ○○지역에 대한 실제 핵 경보 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상황2: 핵 공격 종료 시

-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샤워가 가능한 장소에서는 따뜻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불가한 장소에서는 겉옷을 벗고 젖은 수건 등으로 피부를 닦은 후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 후 깨끗한 옷으로 환복합니다.
- 공격 원점인 폭발 장소에서 멀수록, 신체 노출 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외부와 최대한 차단된 콘크리트 건물의 안쪽 또는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정부의 안내방송을 청취합니다.
- 화재 등으로 대피장소에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최단거리의 대피시설, 콘 크리트 건물 등을 파악한 후 호흡기·피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해당 장소를 이탈하여 인근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여건이 가능할 경우 비닐봉투, 겉옷 등을 통해 손목, 발목 등을 최대한 감 싸고 이동을 실시합니다. 방사성 낙진을 피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 다.
- 이 방송은 안양시 ○○지역에 대한 실제 핵 경보 발령상황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핵 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경보해제(핵)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핵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핵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 재난 경보 방송문안

가. 재난 경보(음성방송)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안양시 ○○지역에 ○○재난(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실제 재난 경보를 발령합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국민 여러분께서는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안양시 재난안 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경보(사이렌 울림 포함)

- 재난경보 사이렌 (유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안양시 ○○지역에 ○○재난(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재난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으면서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경보(호우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니다.
-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삼갑니다.
- 집 주위의 축대, 담장 등의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 은 보수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 철탑, 전주, 고목, 축대 등 위험시설물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가옥 내·외의 배수로를 확인하고 오물 등을 제거하여 물이 잘 빠지도 록 합니다.
- 간판 등 바람에 날릴 염려가 있는 물건은 사전에 단단히 묶어 두거나 제거합니다.
- 교통수단은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행할 때는 평소 잘 아는 도로를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유행하도록 합니다.
- 등산, 낚시, 피서객은 즉시 하산하거나, 신속히 철수하여 안전지대로 대 피합니다.
- 각종 공사장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 가옥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로 포장하여 집안 높은 곳이나, 안전지대로 옮겨 놓습니다.
-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 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니다.
- 재해피해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라. 재난경보(태풍 내습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TV,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니다.

-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고 하천변 등 위험한 곳에 출입을 자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옥·축대 등이 안전한가 살펴보고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합니다.
- 보행 시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니다.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준비를 하신 후 태풍경보 발효 시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 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 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태풍피해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별표 3]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방송 문안

【※ 근거: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 [별표6]】

상황 1: 레이더의 허위항적 포착 시(조류 떼 포착 등)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조류 떼로 인한 관측병의 착오로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2 : 적 항공기 귀순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항공기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3 : 북한 전투기의 군사분계선 침투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을 침투함에 따라 발령되었으나 아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북상 도주하였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4: 화생방 오보 발령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된 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으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5: 핵 경보 오보, 오발령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된 핵 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으로 핵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6: 그 밖의 상황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안양시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양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별표 4]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책임자 및 시설관리요원 임무수칙 (제15조 관련)

관리책임자 및 시설관리요원(이하 "근무자"라 한다)은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한다.

- 1. 근무자는 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 2. 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완벽하게 유지한다.
- 3. 근무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4. 근무자는 비인가자의 경보시설 내 출입을 금하여야 하며, 출입 허용 시에는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5. 근무자는 장비 및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방위 경보 오보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 발생일시 :
- 발생장소:
- 경보의 종류 : 공습 또는 경계
- 가청지역:
- 오보 원인:
- 오보 당시 조치사항:
- 향후 조치계획:

위와 같이 조치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청

< 민방위 경보 오보 해명 방송 문안(예시)>

□ 안양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회 이상 반복)

[별지 제2호서식]

출 입 자 통 제 기 록 부

구분		출		이		자	안 1	게 자	n) =
월일	소속	직 급	성 명	서명	용 무	출입시간	성 명	서명	비고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민방위 경보시설 주간점검표

20 년 월 (단말명:

구 분			 점	검 결	과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전 원 상 태	상시전원 (AC)					
	축전지 (배터리)					
통 신 상 태	유선(DSU)					
	위성 (수신기)					
장 비 상 태	앰 프					
	스피커					
	기타 (장치카드)					
비 치 서 류	수동취명 요령					
	비상연락망					
	방송문안					
비치물품	라디오 동작상태					
	손전등 동작상태					
	소화기 비치여부					
특이사항 (고장 및 조치사항)						

※ 점검결과 양호, 불량으로 표기